

별표

사전심사 필수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와 처리기간

1 폐기물 처리사업

- 개요 : 폐기물 수집·운반업, 처분업, 중간재활용업,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- 법적근거 : 폐기물관리법 제25조
-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
구분	법정 사항	사전심사청구
처리기간	- (20일) 폐기물 수집·운반업 - (30일) (건설)폐기물처리 사업	- (14일) 폐기물 수집·운반업 - (21일) (건설)폐기물처리 사업
구비서류	(1) 폐기물 수집·운반업 - 수집·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·운반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) (2) 폐기물 처분업 -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-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-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조사서 (3) 폐기물 재활용업 -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-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-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조사서 (4) 건설폐기물 처리업 - 건설폐기물의 수집·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- 『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	(1) 폐기물 수집·운반업 - 수집·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·운반계획서(시설 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) (2) 폐기물 처분업 -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-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-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조사서 (3) 폐기물 재활용업 -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-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-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조사서 (4) 건설폐기물 처리업 - 건설폐기물의 수집·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- 『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